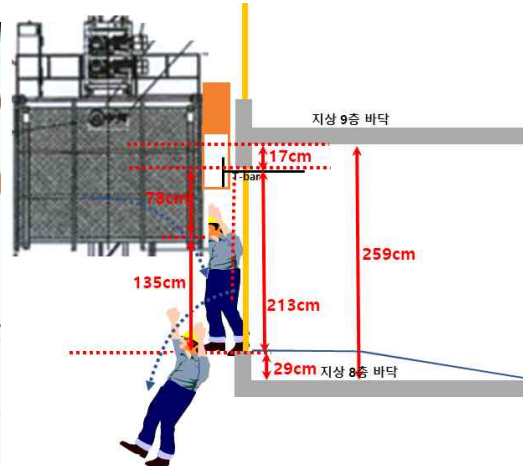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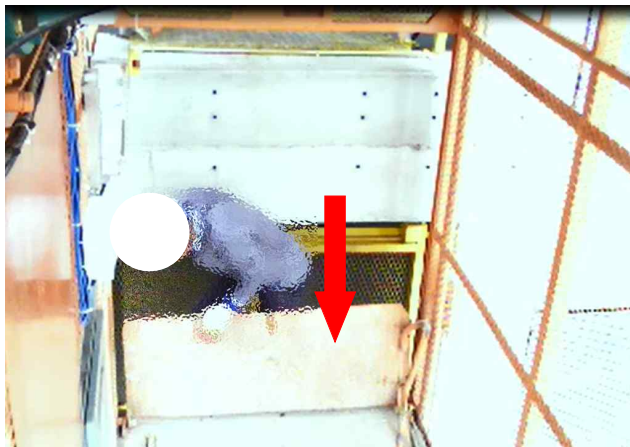


고장난 리프트에서 건물 내부로 내려오던 중 떨어짐

공 사 명	00아파트 신축공사	발생일시	2019. 5. 25(토) 12:25경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사망 1명
소 재 지	경기도 하남시 감일동	공사규모	지하 4층 지상 29층 9개동
재해개요	2019. 5. 25.(토) 12시 25분경 하남시 감일동 소재 00건설이 시공하는 00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운반작업을 하던 재해자(66세, 남, 조적운반공)가 지상 8~9층 중간에 멈춘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한 다음 다시 지상 8층 바닥으로 내려오던 중 리프트 운반구 하부와 지상 8층 발코니 슬래브 사이 수직 개구부(너비 1,300mmX높이1,350mm)에서 떨어져(높이≒22.0m) 사망한 재해임.		

재 해 상 황 도



안전대책	○ 건설작업용 리프트 고장 시 출입금지조치 철저 - 리프트가 층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정지했을 때, 리프트 안전문 시건장치 등의 출입금지 조치 철저히 해야 함. ○ 안전인증기준,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사용 - 리프트와 건물외벽선과의 거리가 150mm초과할 경우 안전난간을 건물의 매 층에 설치하여 안전문 연동장치(T-bar)가 정상 작동토록 해야 함. ○ 건설작업용 리프트 정비 및 고장 시 대응체계 수립 - 리프트 결함 발견시 정비후 노동자가 사용토록 해야 하고, 고장 시 관리감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정비가 완료 될 때까지 리프트를 사용 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함. ○ 건설작업용 리프트 관리감독 철저 - 리프트 사용 전 운행상태, 방호장치 결함여부 등 일일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비가 완료 될 때 까지 노동자가 리프트를 사용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.
------	---